

인천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1가합563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추홀

담당변호사 장성관

피 고 1. B

2. C

3. D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태중

변 론 종 결 2022. 5. 13.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1. 피고 B, C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C이,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은 피고 B, C과 공동하여 그 중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은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사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자 여주시 F 임야 6,7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토지의 매수인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B은 2015. 6. 30.경 E 사무실에서 피고 C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30㎡를 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원고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500만 원을, 2015. 7. 7.경 잔금 6,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2) 피고 B은 2015. 7. 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 C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31㎡를 대금 7,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원고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2015. 8. 27. 잔금 6,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이하 '2015. 6. 30.자 매매계약과 2015. 7. 9.자 매매계약을 합하여'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

피고 B, C은 2017. 6.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합계액 1억 4,000만 원을 반환하고 손해배상금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액면금

2억 1,000만 원, 지급기일 2019. 6. 29., 발행인 피고 B, C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작성의 증서 2017년 제434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1. 5.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 B, C에게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다.

라. 관련 형사사건

원고는 2019. 7.경 피고 B, C을 '이 사건 토지 중 661㎡를 매도하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법검찰청은 피고 B에 대하여만 '피고 B의 전처인 H이 2015. 6. 26.경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5. 7. 7. 서울가정법원 2015즈단30652호로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으며 2015. 7.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 B은 2015. 8. 11. 위 결정문을 송달받아 가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가처분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5. 8. 27. 잔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취지의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1. 10. 10. 피고 B의 사기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2020고단697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 C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서 합동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 겸 소지인인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22. 3. 21.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피고 B, C과 조합관계이고, 피고 B,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2억 1,000만 원의 지급의무는 조합체인 E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조합채무에 해당함과 아울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에 해당한다.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 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피고 D은 E의 조합원으로서 피고 B,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조합채무에 해당하는 약정금 2억 1,000만 원 중 1/3에 해당하는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이 E으로부터 2016년경 사업소득 2,480만 원, 2017년경 사업소득 1,120만 원을 얻고, 각각 74만 4,000원, 3만 3,600원이 원천징수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한 사업소득자에는 피고 C, D뿐만 아니라 2016년경에는 I, J, K, L, M, N, O, P, Q, R, S, T, U, 2017년경에는 S, T, U, V이 더 있는 점, 피고 D이 이 사건 약정 체결이나 약속어음공정증서 작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D이 피고 B, C과 사이에 조합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기, 판사 김현준, 판사 김혜민

1) 피고 B은 2021. 7. 1., 피고 C은 2022. 3. 20. 각 이 사건 소장 부분을 송달받았다.